

경찰의 군사화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정책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f police militarization :
With a focus on U.S. Policy

이 창 규*
Lee, Chang-Kyu

목 차

- I. 서
- II. 경찰의 군사화의 개관
- III. 경찰의 군사화의 규제 법안
- IV. 국내 시사점
- V. 결

국문초록

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 강력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대테러 대응전략은 경찰에게 군사무기를 보급하여 준군사조직으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테러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특공대(SWAT)를 자주 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무장하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위화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해왔고, 이를 가리켜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미국 정부는 경찰의 군사화에 대하여 치안경력의 보호를 위한 단순 방어용이

논문접수일 : 2017. 09. 30.

심사완료일 : 2017. 10. 19.

게재확정일 : 2017. 10. 20.

* 법학박사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라고 주장하였지만 비판여론에 따라 경찰 군사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각각 대통령령 제13684호인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과 대통령령 제13688호인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을 입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일선 시위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지 않는다. 물론 총기탈취범과 인질극 및 테러범죄 등의 중대한 사건에서는 경찰특공대 등이 총기를 소지하여 대응하지만 시위현장과 일반 수사 업무에는 중화기를 소지하고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국에서 이슬람국가(IS)에 의해 크고 작은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의 군사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만일 국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다면 중무장한 경력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경찰의 군사장비의 사용방식과 규제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경찰의 군사장비 조달에 관한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며 보급되는 무기의 종류에 대해서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경찰의 군사화, 경찰특공대, 뉴테러리즘, 1033 프로그램, 경찰관 직무 집행법

1. 서

미국은 9·11 테러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 강력한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사전 예방적 전략체계에 따라 소극적 반테러(anti-terrorism)전략에서 적극적 대테러(counter-terrorism)전략으로 변화된 것이다.¹⁾ 미국의 대테러 대응전략은 경찰에게 군사무기를 보급

1) 조성권, “9·11 테러이후 미국 대테러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6, 296면.

하여 준군사조직으로 변모시킴과 동시에 테러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특공대(Special Weapons and Tactics Team : SWAT)를 종종 현장에 출동시켰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무장하고 출동한 경찰특공대에게 위화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해왔고, 이를 가리켜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라고 지칭하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²⁾

미국에서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크게 촉발된 사건은 바로 2014년 8월 9일 미국 미주리(Missouri)주의 퍼거슨(Ferguson)시에서 발생한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의 사망 사건이다.³⁾ 이 사건은 경찰의 총기사고로 인하여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하였고, 이에 대규모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이후 항의시위가 소요사태로 거듭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경찰특공대가 지뢰방어차량(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Vehicle : MRAP), 자동소총, 섬광탄(flashbang grenade)으로 무장하여 현장에 출동한 모습이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되면서 경찰의 군사화를 규탄하는 여론이 매우 크게 형성되었다.⁴⁾

미국 정부는 경찰의 군사화에 대하여 소요사태에서 시민들이 중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만큼 치안경력의 보호를 위한 단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어져 갔고, 이에 경찰 군사장비의 사용에 대한 규제를 위해 각각 대통령령 제13684호(Executive Order 13684)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과 대통령령 제13688호(Executive Order 13688)인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을 입법하게 되었다.⁵⁾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일선 시위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지 않는다. 물론 총기탈취범과 인질극 및 테러범죄 등의

2) Peter B. Kraska, “Militarization and Policing—Its Relevance to 21st Century Police”, *Policing Advance Access published December 13, 2007*, at 2-3.

3) 뉴욕타임즈, “What Happened in Ferguson?”, <<https://www.nytimes.com>>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4) 씨엔비씨, “Where Ferguson’s ‘military’ police get their gear”, <<http://www.cnn.com>>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5)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Executive Order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중대한 사건에서는 경찰특공대 등이 총기를 소지하여 대응하지만 시위현장과 일반 수사업무에는 중화기를 소지하고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해외에서 발생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 IS)의 테러가 중동아시아에서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테러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⁶⁾ 만일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종종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테러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중화기 소지의 허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미국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Ⅱ.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 개관”에서는 경찰의 군사화의 개념과 허용여부, 국방부의 경찰에 대한 군사장비 조달체계로서 1033 PROGRAM을 살핀다. 그리고 “Ⅲ.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의 규제 법안”에서는 경찰의 군사화의 규제를 위한 법안인 Executive Order 13684와 Executive Order 13688을 분석한다. 이후 “Ⅳ. 국내 시사점”에서는 국내 경찰의 군사장비의 규제법 등을 검토하고, 뉴테러리즘에 대비하여 경찰의 군사화의 필요성과 미국의 법안추이를 검토한다.

Ⅱ. 경찰의 군사화의 개관

1. 경찰의 군사화 개념

가. 민병대소집법(Posse Comitatus Act)과 경찰의 군사화

미국 연방법인 민병대소집법(Posse Comitatus Act)에서는 치안유지와 범죄수사 등 경찰 기능은 군사적 영역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⁷⁾ 이러한 민병대소

6) 윤민우, “이슬람국가(IS: The Islamic State)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14, 9-10면.

7) George Withers, Lucila Santos and Adam Isacson, *Preach What You Practice*, WOLA, NOVEMBER 2010, at 2.

집법은 헌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수권되지 않는 한 연방정부가 군대를 법 집행 활동(law enforcement activity)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18 U.S.C. § 1385).⁸⁾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사태를 계기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자국 내에서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경찰의 활동이 군사적 영역에 치중하는 경향을 가리켜 ‘경찰의 군사화(police militarization)’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⁹⁾ 경찰의 군사화에 대해서 강학상 엄밀히 정의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경찰의 일반적인 군사장비 보유의 인정과 사용이며, 둘째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군사 장비를 가진 부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경찰활동에 군사적 성격을 더하는 경우이다.¹⁰⁾

경찰의 일반적인 군사장비보유의 인정은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의 일반적인 군사장비보유의 인정과 사용은 인질사건 등에 대한 대응을 임무로 하는 police paramilitary unit(PPU)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왔다.¹¹⁾ 이 조직은 일반적으로 SWAT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군사부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¹²⁾ 특히 SWAT는 군사작전 행동준칙 및 장비 그리고 군조직 문화 등을 갖고 있는 해군 특수작전부대인 Navy Seals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테러의 대응 임무를 맡고 있다.¹³⁾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지만 군사 장비를 가진 부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경찰활동에 군사적 성격을 더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치안유지의 강화를 위해 경찰의 군사화를 직접적으로 실행 중이며, 주정부에서는 군사 장비를 가진 부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¹⁴⁾ 주정부에서는 1980년대 중반

8) Charles Doyle, Jennifer K. Elsea, *The Posse Comitatus Act and Related Matters: The Use of the Military to Execute Civilian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at 1.

9) Peter B. Kraska, *Ibid.*, at 2-3.

10) *Ibid.*, at. 3.

11) *Ibid.*, at. 5.

12) D.A. Lopez, “SWAT Operations and Deadly Force: A Comparison of National Data with the Dorner Case”, *Social Criminal*, Volume 2, Issue 1, 2013, at 5.

13) Radley Balko, *Overkill: The Rise of Paramilitary Police Raids in America*, the Cato Institute, 2006, at 5.

부터 군사 장비를 갖춘 경찰부대를 20% 정도 보유하는 것에 그쳤지만 2014년부터는 80%까지 증가하였고, 인구 2만 5,000명에 불과한 주정부의 23개 기관이 군사 장비인 대지뢰, 지뢰방어차량(MRAP)까지 보유하고 있다.¹⁵⁾

나.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인권단체의 반발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중무장한 경찰 등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면 테러대응이 아닌 일반 수사 활동에 군사 장비를 착용한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은 경찰의 군사화에 대해서 “War Comes Home : The Excessive Militarization of American Policing”라는 보고서에서 SWAT의 창립경위와 함께 운영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¹⁶⁾ 특히 SWAT 설립 이후에 창립목적보다 업무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ACLU는 SWAT의 창립목적이 원래 인질극 등의 긴급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근차에는 일반적인 수사 활동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이와 함께 SWAT는 경찰부대로서 예외적인 국가비상 사태에 대응하였지만 비효율적으로 치안유지 활동에도 투입되고 있다는 비난도 주목할 수 있다.¹⁸⁾

ACLU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의 출동 횟수 중 79%가 일반적인 수사목적으로 출동하였으며, 대테러사건과 인질사건 등 저격수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사건으로 출동한 비율은 7%에 불과하며, 주요 출동목적이 마약수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¹⁹⁾ 그리고 SWAT가 수사목적으로 출동할 때 군사 장비로 무장함과 동시에 섬광을 발사하여 상대를 한시적으로 무력화하는 장비

14) Peter B. Kraska, *Ibid.*, at 6.

15) Kara Dansky, “Local Democratic Oversight of Police Militarization”, *Harvard Law & Policy Review* Vol. 10, 2016, at 61.

16)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War Comes Home: The Excessive Militarization of American Policing*, June 2014, at. 18.

17) *Ibid.*, at 22.

18) Peter B. Kraska, *Ibid.*, at 8.

19)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Ibid.*, at 30.

인 ‘섬광탄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²⁰⁾²¹⁾ 섬광탄은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법집행 활동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며, 수사를 위한 명분이 있지만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²²⁾

2. 경찰의 군사장비 조달 체계

가. 미국 국방부의 1033 PROGRAM

미국에서 경찰에게 군사 장비를 조달하는 정책은 바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1033 PROGRAM이다. 이 시책은 국방부가 군사 장비를 경찰에 제공하는 정책이며, 법적근거²³⁾는 1997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 of 1997) 제1033조(10 U.S.C. § 2576a)를 들고 있다.²⁴⁾ 이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United States Secretary of Defense)은 소형화기와 탄약을 비롯한 국방부 소유의 군사 장비를 마약단속과 대테러활동 등 법집행활동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연방정부 기관 및 주정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 국방부 장관은 이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사법부 장관 및 국가마약정책국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과 협의해야 한다.²⁶⁾

국방부의 1033 PROGRAM은 국방부의 소속의 국방부 군수국(Defense Logistics Agency : DLA) 법집행지원실(Law Enforcement Support Office)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주정부 기관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몇몇 절차를 거쳐

20) flashbang grenade로 불리며, 영국의 SAS(Special Air Service)에서 개발한 제압용 수류탄이다. 살상 가능성이 낮아 대테러부대에서 애용하는 무기이다. <<http://www.eliteukforces.info/>>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21) *Ibid.*, at 31.

22) Radley Balko, *Ibid.*, at 4.

23) Daniel H. Else, *The “1033 Program” Department of Defense Support to Law Enforc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 at 1.

24) *Ibid.*, at 2.

25) *Ibid.*

26) *Ibid.*, at 5.

야 한다. 우선 참가하는 주정부는 DLA과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합의각서를 맺고 주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실시를 임무로 하는 프로그램 조정관(coordinator)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참가를 희망하는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ies)은 프로그램 조정관을 통해 DLA에 참가의사를 전달하고 참가가 승인이 되면 해당 주정부의 DLA 현지기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²⁷⁾ DLA 법집행지원실은 참여기관을 통한 물품제공의 요청에 대한 제공여부의 적절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나 수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²⁸⁾

연방의회 공청회에서의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9월 시점에서 8,000개 이상의 연방 또는 지방의 법집행기관이 1033 PROGRAM에 참여했으며, 1990년 이후 50억 달러이상의 장비를 제공받고 있다고 한다.²⁹⁾ 이 장비들은 규제 이외의 물품(non-controlled property)과 군사장비에 해당하는 규제물품(controlled property)으로 나뉘는데 제공되는 물품의 96%는 규제 이외의 물품이 제공하는 경우에도 전차와 구경(口徑) 7.62mm 이상의 총포 등, 전투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장비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³⁰⁾

나. 기타 연방정부 기관의 지원

경찰의 군사장비보유에 대한 체계는 국방부 이외의 연방정부기관의 재정예산의 확립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국토안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 DOE)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DOJ)는 경찰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안보부가 관할하는 프로그램에는 국토안전보장 프로그램(State Homeland Security Program)과 도시구역 안전보장 프로그램(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Grant Program)에

27) *Ibid.*, at 3.

28) *Ibid.*, at 2.

29) Jeremy J. Timko, *The 1033 Program: Redefining Police-Community Relations*, Master's Capstone Theses, 2015, at 6.

30) *Ibid.*, at 64.

따라 2014 회계연도에 맞추어 1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³¹⁾ 그리고 법무부는 “BJA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회계연도의 출연금은 3억 7,600만 달러(한화 : 약 4,310억원)에 이른다.³²⁾

Ⅲ. 경찰의 군사화의 규제 법안

1. Executive Order 13684 제정과 군사장비 규제방안

미국정부는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에 경찰활동의 개혁을 위하여 대통령령 제13684호로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684 of December 18, 2014 :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을 제정하였다.³³⁾ 이 법령은 경찰활동의 기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자문기구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개혁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³⁴⁾

이후 미국 정부는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경찰의 군사장비보유와 사용에 대한 규제를 정책과제로 내걸고 2014년 12월에 “Review: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³⁵⁾ 이 보고서는 1033 PROGRAM 등 연방정부의 군사장비 조달지원에 관한 체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였고, 각각의 지원 프로그램 사이의 내용이 합리적이

31) The National 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Association, *A Rep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Program*, 2011, at 17.

32) “BJA Edward Byrne Memorial Justice Assistance Grant Program”, <<https://www.bja.gov/jag/>>,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33)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684 of December 18, 2014: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Federal Register*, Vol. 79 No. 246, December 23, 2014.

34)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Final Repor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May 2015, at 1-2.

35)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Review: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December, 2014.

지 못하다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³⁶⁾ 첫째는 경찰의 군사장비조달에 관한 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결정됨에 따라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한다. 둘째는 군사장비의 조달을 지원하는 연방정부기관과의 협의사항의 조정이 충분하지 않아 장비조달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셋째는 경찰이 언제 군사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실제 사용을 적절히 하기 위한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마지막 넷째는 과도한 군사장비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이 경찰의 군사화를 초래하여 경찰과 지역 사회와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실시해야 할 방안을 제안하였다.³⁷⁾ 첫째, 경찰의 조달에 적합한 군사장비의 목록을 정비할 것, 둘째, 경찰의 군사장비 요구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이 재검토 및 승인을 할 것, 셋째, 경찰에게 군사장비의 적절한 사용과 인권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훈련의무를 부과할 것, 넷째, 경찰이 사용한 군사장비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2. Executive Order 13688의 제정

가. Executive Order 13688의 개요

보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2015년에는 경찰의 군사장비에 관한 규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3688호로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688 of January 16, 2015: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을 제정하였다.³⁸⁾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6)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Executive Order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37) *Ibid.*

38) Law Enforcement Equipment Working Group, *Recommendations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688: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May

제4조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이하에서 언급할 수 있다.

제1조는 제정목적(Policy)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군사장비 지원은 법집행기관의 임무달성에 조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비에는 화기와 전투차량 등이 포함되며, 이에 연방정부는 규제물품(controlled equipment)을 제공할 때의 절차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규제물품의 적절한 사용에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것과 함께 해당 장비를 수령할 때에는 경찰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책무를 인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법집행 물품 작업반(Law Enforcement Equipment Working Group)에 관한 내용이다. 법집행기관의 규제물품조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연방정부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는 부처 간 공동협의체로서 법집행 물품 작업반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Working Group은 각 국방부 장관(the Secretary of Defense),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 재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내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교육부 장관(the Secretary of Education), 연방 조달청장관(the Administrator of General Services), 국가마약정책국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행정관리에산국장(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토안전보장 및 테러대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tergovernmental Affairs and Public Engagemen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기관의 장은 Working Group 내에서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상급직원을 해당기관에 임명할 수 있다. Working Group 내에서는 회의의제 결정이나 정기회의 소집을 임무로 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3조는 Working Group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Mission and Function of the Working Group). a항에서는 법집행기관의 규제물품 조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2015.

Working Group이 대통령에게 몇몇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첫째, 법집행기관의 조달에 적합한 규제물품의 연방정부 공유목록을 정비할 것(Government-wide list of controlled equipment), 둘째, 연방정부의 공유목록의 검토 및 품목의 추가에 관련된 작업 절차를 정할 것(establishing a process to review), 셋째, 법집행기관의 규제물품의 조달에 관한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서로 조화를 시킬 것(harmonizing Federal programs), 넷째, 연방정부에 의한 제공되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규제물품이 사용된 중대한 사안(significant incidents)에 대해서 법집행기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요구할 것(after-action analysis reports for significant incidents), 다섯째, 연방정부에서 조달한 규제물품이 더 이상 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returning specified controlled equipment), 여섯째, 법집행기관에 의한 규제물품의 요구 또는 조달은 지역기관(local civilian government)에 대한 재검토 및 승인을 받을 것(review of and authorization for LEAs' request for or acquisition), 일곱째, 조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규제물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을 것(Federal controlled equipment programs receive necessary training) 등이다. 또한 b항은 Working Group이 위의 사항들을 포함한 권고를 계획할 때에는 지방당국이나 인권단체, 학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조는 보고(Report)에 관한 내용이다. 제3조에 규정하는 권고에 관한 제출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목록의 정비, 목록의 검토절차 등의 제정과 관련한 권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한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것과 만일 다른 사항에 관련한 권고는 1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경찰의 군사장비 활용 권고안

Executive Order 13688의 시행목적은 관련 부처와 협의한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법집행기관의 군사장비의 규제와 관리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실시해야 할 조치를 입안 및 권고하는 것에 있다. 또한 이 명령은 권고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5월에는 Executive

Order 13688의 규정에 기초하여 Working Group에서 대통령 권고내용이 발표하였다. 대통령의 권고내용은 모두 다섯 개의 분야로서 군사장비 목록, 장비관련 정책, 훈련 및 절차, 장비조달 절차, 장비이전 매각반환 및 처분, 관련 시책 모니터링 준수 및 실시, 준수 및 실시에서 연방정부가 해야 할 열세가지의 사항을 들고 있다.³⁹⁾

또한 대통령의 권고는 Executive Order 13688 제3조와 내용은 중복되지만 주요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에 제공이 금지 또는 허용된 군사장비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운용 할 것(Government-wide list of controlled equipment allowable for acquisition), 둘째, 경찰에 대한 군사장비 사용에 관련된 훈련을 의무화할 것(training on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셋째, 경찰에 대한 군사장비가 사용된 중대사안(significant incidents)에 대하여 보고할 것(after-action analysis reports for significant incidents), 넷째, 수령한 군사장비의 반환 또는 처분에 대해서 경찰은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할 것(ensure that LEAs abide by any limitations), 다섯째,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통일된 표준을 제공하고, 그 표준이 기관 사이에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보장할 것(ensuring those standards are implemented consistently across agencies), 여섯째,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경찰 기관에 대한 군사 장비를 반환할 것(ensuring a process for returning specified controlled equipment) 등이다.

대통령의 권고는 제공금지 장비리스트에 관한 권고가 대통령에게 제출된 시점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공표하고 있으며, 2015년 5월부터 운용이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Working Group은 검토권고의 실시(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라는 문서를 통해 과거에 국방부가 제공한 군사장비에 대한 금지목록으로 기재된 것을 2016년 6개월까지 장비가 회수할 것을 문서화하고 있다.⁴⁰⁾

한편, 제공이 허가되는 장비인 규제물품에 대해선 경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표준목록의 작성을 지시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에 협력단체

39) Law Enforcement Equipment Working Group, *Ibid.*, at 36-42.

40) The Law Enforcement Equipment Permanent Working Group,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Acquisition*, 2015, at 2.

인 국제경찰서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 IACP)가 자료를 작성하였다.⁴¹⁾ 이 자료에는 규제물품의 일람표 예시가 게재되어 있고 집행기관은 이 예시에 준하여 해당 기관에 의한 규제물품의 조달, 사용관리, 해당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각각 일람표를 작성하고 있다.

IV. 국내 시사점

1. 우리나라의 경찰의 군사화

가. 경찰특공대의 군사장비의 사용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일하게 시위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지 않는다. 또한 마약단속과 같은 강력범죄 현장에도 경찰특공대 등이 중무장한 채로 투입되지 않는다. 다만 총기탈취범과 인질극 및 테러범죄 등의 중대사건에서는 경찰특공대 등이 총기를 소지하여 대응하지만 시위현장과 일반 수사업무에는 중화기를 소지하여 투입되지 않는다.⁴²⁾⁴³⁾

그러나 미국은 9·11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가 경찰의 군사무기 구매를 지원해주면서 특공대를 앞세운 경찰의 중무장화가 가속화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LA 등 대도시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SWAT를 설치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는 레이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군경합동작전으로

41)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Federally Controlled Equipment Sample Policy*, 2015, at 2.

42) 우리나라 경찰특공대의 장비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무기류가 10종 1,757점 MP-5기관단총, P7권총, 저격총 등을 갖고 있으며, 안전보호장비는 18종 2,946점 특수방호복, 방탄방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작전장비 23종 943점 다목적공구, 전파교란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검색관찰장비 35종 1,998점으로 금속탐지기, 야간조준경, 전자내시경 등을 갖고 있고, 기동장비는 모두 8종 86점으로 경호용 서버밴, 장갑차, 탐지견수송차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기타 장비로는 정보통신장비 2종 749점 헤드폰, 휴대용무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경환, 「국제회의 대비 경찰활동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24면.

43) 경찰특공대가 시위현장에 투입된 대표적인 시위현장은 2009년 1월에 있었던 용산4구역 철거현장으로 중화기로 무장하지 않았다.

헬리콥터와 U2 정찰기를 타고 소탕작전을 펼쳤다. 미국 내 인구 5만 명 내외의 소도시 가운데 경찰 특공대를 설치한 곳은 1983년 이전에는 13%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기준으로 80%를 넘어섰다.⁴⁴⁾ SWAT가 출동하는 진압작전은 1970년대 연 100여건에서 1980년대에는 연 300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연 50,000여건을 넘겼다. 중요한 것은 뉴욕이나 LA와 같은 대도시에만 특공대가 설치된 것이 아니라 소도시까지 SWAT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국방부의 1033 PROGRAM과 같이 국방부가 경찰청에 군사장비를 조달하는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Executive Order 13684와 Executive Order 13688과 유사하게 경찰의 군사장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들은 경찰관의 무기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조 제1항). 우리나라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경찰의 물리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이는 위해성 경찰장비 특히, 총기 사용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⁴⁵⁾ 이에 무기 또는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의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체포술, 명령, 단순 현장 임장 등은 경찰 물리력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다.⁴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조 제2항은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로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구분하고 있다.⁴⁷⁾ 「경찰장비관리

44) Peter B. Kraska, *Ibid.*, at 17.

45) 최규범, “경찰관 물리력 사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객관적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7호, 경찰대학교, 2004, 120면.

46) 이 훈,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5, 6면.

47)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 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 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 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규칙」 제112조 제1호는 무기에 대하여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57조에서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통상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서 무기(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 분사기 등(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검용경봉,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 기타장비(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 [스편지탄·고무탄·페인트탄·조명탄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미국 경찰의 제공장비

경찰에 제공이 금지되는 장비	경찰에 제공이 허용되는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갑차(Tracked Armored Vehicles) • 전투기, 함선 및 그 종의 모든 차량 (Weaponized Aircraft, Vessels, and Vehicles of Any Kind) • 구경 50mm 이상의 화기 • 구경 50mm 이상의 탄약 • 수류탄 발사기(Grenade Launchers) • 대검 • 위장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식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 무인 항공기 • 장륜장갑차(Armored Vehicles, Wheeled) • 장륜전투차(Tactical Vehicles, Wheeled) • 지휘통제차(Command and Control Vehicles) •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경 50mm 이하의 화기 및 탄약 • 폭약과 발연통 발광탄 등(Pyrotechnics) • 파괴 용기구 (Breaching Apparatus) • 경찰봉, 헬멧 및 방패

자료 : Law Enforcement Equipment Working Group, *Recommendations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688: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May 2015, at 36-37

나. 경찰장비의 사용규제

우리나라의 경찰관의 무기의 사용은 상당히 엄격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무기의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은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은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와 몇몇 행위에 있어서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대간첩 작전 수행과정 중에 무장간첩의 명령 불응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경찰의 무기 사용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밀바탕으로 하고 있다.⁴⁸⁾ 나아가 치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안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테러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무기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비례의 원칙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테러사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무기 사용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에 총기 등의 무기사용은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적법한 경찰권 행사로 판단하여 경찰관에게 일체의 책임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48) 박형욱, “위해수반 총기사용의 요건으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의 문제점과 총기사용으로 인한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경찰학연구』 제15권 제1호, 경찰대학교 2015, 73면.

견해가 있다.⁴⁹⁾ 사건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대법원 판례⁵⁰⁾에서 무기사용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엄격한 법집행으로 경찰의 치안유지 업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우리나라 경찰의 군사화 도입의 필요성

가. 뉴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한 경찰의 군사화

(1) 뉴테러리즘의 개념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은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테러리즘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테러리즘을 ‘뉴테러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다.⁵¹⁾ 뉴테러리즘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 테러집단이 정체가 불명하여 색출이나 추적이 곤란하다. 둘째,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량살상하기에 그 피해가 상당하다. 셋째, 테러조직이 단일화 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연결된 조직이다. 넷째, 생화학무기와 같이 제작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고 대량살상효과가 있는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⁵²⁾

(2) 국내의 뉴테러리즘과 경찰 군사화의 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은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에 의한 테러와 국제테러 세력에 의한 테러, 체류 외국인 관련 테러 등이 있다.

먼저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에 의한 테러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인 정찰

49) 정신교·김준성,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강원법학」 제4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773~774면.

5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51)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은 1999년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RAND Corporation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RAND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던 브루스 호프만(Bruce Hoffman)이 처음 주장하였다. 이상열,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15, 98면.

52) 이호용, “효율적인 국가대테러조직체계의 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2, 234면.

중국 등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과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누적된 경제난 및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로 인한 내부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군사적 도발과 함께 공항, 항만, 원전, 정부기관, 군사시설 등 국내 주요시설과 국민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⁵³⁾

그리고 국제 테러세력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 국가(IS)가 한국을 테러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정부에 테러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⁵⁴⁾ 이에 따라 소관 부처와 기관들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응태세 강화조치를 마련하였다.⁵⁵⁾

마지막으로 체류 외국인 관련 테러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89만 명, 불법체류자가 21만 명으로 약 21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⁵⁶⁾ 외국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범죄의 증가는 물론 국내 생활에 대한 불만자 또는 극단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과 국제 테러세력에 의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다.⁵⁷⁾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같이 테러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가 중동에서 유럽과 동남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이에 국내에서 테러 발생을 대비하여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공간 형성과 더불어 대테러에 대응할 할 수 있는 경찰 무장의 허용 범위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에서 경찰의 군사화에 관한 논의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군사장비의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대립이 첨예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군사장비 사용을 위해선 반대의견에 대한

53) 이대우, “증가하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 「정세와 정책」 2013년 5월호, 세종연구소, 2면.

54) 국회 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5년 12월, 5-6면.

55) 한국일보, “국정원 “IS테러 한국도 타깃 가능성” 경고”, 2014년 10월 9일자.

56)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57) 이상열, 전개논문, 104면.

58) 2015년 11월 프랑스의 파리, 2016년 1월에 터키의 이스탄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테러가 발생되었다. 윤민우, 전개논문, 2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측은 경찰의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ACLU 등의 인권단체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군사장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ACLU가 2014년 11월 연방의회 청문회에 단체로 제출한 서면 자료는 1033 PROGRAM에 의한 장비제공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좁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토권고에서는 허용하고 있는 병력수송 장갑차(Armored Personnel Carrier : APC)를 포함한 자동소총 등 법집행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군사장비의 제공을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⁵⁹⁾

또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는 2015년 3월 Working Group에 보낸 서한에서 경찰활동 전반에 관한 더 큰 관점에서 군사장비 문제에 관한 제언을 했으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비의 사용과 인권침해에 관여한 경찰조직의 장비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경찰의 군사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관계자 등은 인명 구조를 포함하고 위험한 임무에서 군사 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장비지원에 관한 종래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나. 경찰 군사화에 관한 입법 추이

미국 정부는 군사장비의 규제에 대해서 대통령 주도로 기본시책을 입안한 후에, 대통령령에 기초하여 설치한 Working Group의 권고에 따른 기본시책의 방향성을 확인 및 보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1033 PROGRAM을 시행하고 군사장비의 제공의 체계를 정한 연방법에 대한 개정이나 신규 입법은 행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연방의회에서의 여당과 야

59)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department of defense excess property program in support of U.S. law enforcement agencies: an overview of dod authorities, roles, responsibilities, and implementation of section 1033 of the 199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14, at 4.

60) Human Rights Watch, "Statement to the Law Enforcement Equipment Working Group", March 3, 2015, <<https://www.hrw.org/>>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당의 갈등으로 관련 법률안의 제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매우 지방분권적이고 지방자치단체 경찰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은 한정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독립에 따른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⁶¹⁾

연방의회는 법집행기관의 군사 장비를 둘러싼 정책 과제에 대해서 여러 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역시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평가에 따른 법안의 목적이나 내용은 엇갈린다. 제113회 회기(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에는 군사장비의 규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찬성하는 측에서 “Stop Militarizing Law Enforcement Act” 법안이 양원에 각각 제출되었다.⁶²⁾ 이 법안은 1033 PROGRAM의 근거법에 대해 잉여물품을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 법집행활동에서의 사용에 적합해야 하는 요건을 개정하여 법집행활동의 범위에서 마약단속을 삭제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의 군사화와 관련이 있는 마약관련 수사에 SWAT를 투입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안은 1033 PROGRAM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와 국토 안보부와 법무부의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조달 할 수 있는 군사장비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⁶³⁾

이후 제114회 연방의회 회기(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에도 비슷한 법안이 양원에 제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의 중이다.⁶⁴⁾ 한편 군사장비의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복수법안이 양원에 제출되고 있지만 역시 입법되지 않았다.⁶⁵⁾ 이들 법안은 2015년 5월 이후에 잉여장비의 제공을 제약할 목적으로

61) 아틀란틱, “Congress Isn’t Ending the Pentagon-to-Police Weapons Program Anytime Soon”, AUG 14, 2014, <<https://www.theatlantic.com/>>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62) 이 법은 과도한 개인 재산을 연방 및 주법집행기관에 이전 할 수 있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의 권한을 수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재산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기술 역량 및 교육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잉여의 재산을 국방부에 반환해야 한다. 연방 기관이 아닌 수혜자는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 및 관할 지역의 주요 위치에 게시하여 국방부 소유물에 대한 확인요청을 해당 지역 사회에 통보했음을 증명해야한다. H.R.5478 : Stop Militarizing Law Enforcement Act, <<https://www.congress.gov/>>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63) *Ibid.*

64) H.R.1232 : Stop Militarizing Law Enforcement Act, <<https://www.congress.gov/>>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65) H.R.4880 : Protecting Lives Using Surplus Equipment Act of 2016, <<https://www.congress.gov/>>

발표된 어떤 규칙과 지침 및 권고도 연방의회를 통하여 입법화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과 2015년 5월 이후에 회수된 군사장비에 대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장비규제 정책의 무효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였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군사장비의 규제에 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정부는 기존 경찰의 군사장비 제공지원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제공이 금지된 장비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활동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장비의 조달 및 사용의 적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 제출된 여러 가지 군사 장비를 위한 규제안은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으며 시책의 시행에도 불투명하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일하게 시위현장에 군사장비로 무장한 경찰특공대 등이 투입되지 않으며 마약단속과 같은 강력범죄 현장에도 경찰특공대 등이 중무장한 채로 투입되지 않는다. 다만 총기탈취범과 인질극 및 테러범죄 등의 중대사건에서는 경찰특공대 등이 총기를 소지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부의 1033 PROGRAM과 같이 국방부가 경찰청에 군사 장비를 조달하는 정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Executive Order 13684와 Executive Order 13688과 유사하게 경찰의 군사 장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외와 같이 테러사건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테러단체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가 중동에서 유럽과 동남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시

(최종방문일 2017년 9월 26일).

아에서 최초로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사건이 2017년 1월 14일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인 탐린(Thamrin) 거리에서는 이슬람 국가(IS)의 추종자들이 폭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하여 민간인 4명을 숨지게 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테러 발생을 대비하여 경찰의 군사화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이 대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할 수 있는 무장의 허용범위의 확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대량의 위험물과 총기 등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자는 즉시 총기를 이용해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에서 경찰의 군사화에 관한 논의는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군사장비의 허용범위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군사장비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선 반대의견에 대한 당위성의 제시가 필요하다. 결국, 경찰의 군사장비의 사용방식과 규제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에 대한 위협과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장차 테러방지를 위해 대량의 위험물 등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자는 총기를 이용해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1) 국내문헌

이 훈, 「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재정립을 통한 치안환경 안전 확보 방안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2015.

최경환, 「국제회의 대비 경찰활동 연구」, 경찰청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2010.

(2) 국외문헌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War Comes Home: The Excessive Militarization of American Policing*, June 2014.
- Doyle, Charles, Jennifer K. Elsea, *The Posse Comitatus Act and Related Matters: The Use of the Military to Execute Civilian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2.
- Else, Daniel H., *The “1033 Program” Department of Defense Support to Law Enforcement*,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4.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Review: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December, 2014.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Federally Controlled Equipment Sample Policy*, 2015.
- Timko, Jeremy J., *The 1033 Program: Redefining Police-Community Relations*, Master's Capstone Theses, 2015.
- Law Enforcement Equipment Working Group, *Recommendations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3688: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Equipment Acquisition*, May 2015.
- Presidential Documents; Executive Order 13684 of December 18, 2014: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Federal Register*, Vol. 79 No. 246, December 23, 2014.
-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Final Report of the President's Task Force on 21st Century Policing*, May 2015.
- The Law Enforcement Equipment Permanent Working Group,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ederal Support for Local Law Enforcement Acquisition*, 2015.
- The National 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Association, *A Repor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Urban Area Security Initiative Program*, 2011.
- Balko, Radley, *Overkill: The Rise of Paramilitary Police Raids in America*,

the Cato Institute, 2006.

2. 논문

(1) 국내문헌

- 박형욱, “위해수반 총기사용의 요건으로서의 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의 문제점과 총기사용으로 인한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경찰학연구」 제15권 제1호, 경찰대학교 2015.
- 윤민우, “이슬람국가(IS: The Islamic State)에 대한 이해와 최근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리즘 동향”, 「국가정보연구」 제7권 2호, 「한국국가정보학회」, 2014.
- 이대우, “증가하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 「정세와 정책」 2013년 5월호, 세종연구소.
- 이상열,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2호, 한국경찰학회, 2015.
- 이호용, “효율적인 국가대테러조직체계의 구성 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02.
- 조성권, “9·11 테러이후 미국 대테러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6.
- 최규범, “경찰관 물리력 사용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객관적인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7호, 경찰대학교, 2004.
- 국회 정보위원회,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2015년 12월.

(2) 국외문헌

Committee on armed service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department of defense excess property program in support of U.S. law enforcement agencies: an overview of dod authorities, roles, responsibilities, and implementation of section 1033 of the 1997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14.

Lopez, D.A., *SWAT Operations and Deadly Force: A Comparison of National Data with the Dorner Case*, *Social Criminal*, Volume 2, Issue 1, 2013, pp. 1-6.

Withers, George, Lucila Santos and Adam Isacson, *Preach What You Practice*, WOLA, NOVEMBER 2010.

Dansky, Kara, *Local Democratic Oversight of Police Militarization*, *Harvard Law & Policy Review* Vol. 10, 2016.

Kraska, Peter B., *Militarization and Policing—Its Relevance to 21st Century Police*, *Policing Advance Access* published December 13, 2007.

[Abstract]

A Study of police militarization :
With a focus on U.S. Policy

Lee, Chang-Kyu

Researcher, Kyung Hee Institute of Legal Studie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built a system to deal with extremely strong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The strategy of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supplemented the police with military weapons and changed it to a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police special commandant frequently dispatched to the demo site. However, the citizen felt a sense of incompatibility with the police special commandant who launched heavily and armed and mentioned the sense of uneasiness about this. The fact that fear is felt from police officers armed

with citizens as such is regarded as the militarization of the police. The US government insisted that the militarization of the police was a means to protect the police. However, based on criticism of the people legislated the Executive Order 13684 and Executive Order 13688.

Korea has not been dispatched to police force military armed with military equipment on the demonstration site. However, in Europe terrorism has occurred in IS, so Korea cannot be a terrorist safe area as well. Therefore, even in South Korea, discussion on the militarization of the police is necessary. If terrorist incidents occurr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heavily armed police which can create discomfort for the peopl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discuss police military equipment usage and regulation in advance.

Key words : police militarization, SWAT, new terrorism, 1033 PROGRAM,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